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6 ~ 33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 및 용도지역 내 입지가능시설 확대 등 규제완화 사항 조례반영으로 토지효율성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2. 주요내용

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필요한 조항 삭제(안 제9조)

나. 개발행위허가 취소 조문 삭제(안 제26조)

다. 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규제 완화(안 제50조제2항, 제54조제2호)

라. 생산녹지지역 내 산지유통시설 건폐율 완화(안 제53조제2항제3호)

마.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 내 건폐율 완화(안 제53조제5항)

바. 일반주거지역 내 떡·빵 제조업의 공장 설치 허용(안 별표 3)

사. 생산관리지역 내 교육관에의 일반음식점 등 설치 허용(안 별표 18)

아. 야영장 시설 입지 가능 용도지역 확대(안 별표 3 ~ 별표 5, 별표 7, 별표 10, 별표 12, 별표 14, 별표 15, 별표 18, 별표 20, 별표 22)

자.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인용 조문 등 변경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 법무통계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6. 3. 29. ~ 4. 19.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거창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에 의한다.”를 “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동시설”을 “그 시설”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

제26조를 삭제한다.

제28조 중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6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6호”로 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본문 중 “영 부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부칙(대통령령 제17816호, 2002. 12. 26.) 제13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33조·제35조·제37조·제38조의 각 호 외 본문 중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를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로 한다.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9조제1항에 따라 지구 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 해당 계획이 수립 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경상남도나 군이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정한다)

②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
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

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

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제53조제1항제19호 본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53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영 제84조제7항”을 “영 제84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84조제8항”을 “영 제84조제9항”으로 “자연녹지지역내의”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⑤ 영 제84조의3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
2.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30퍼센트 이하

제54조 각 호 외의 본문 중 “영 제84조제3항”을 “영 제84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50퍼센트”를 “6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
 -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제55조 본문 중 “영 제84조제4항”을 “영 제84조제5항”으로 한다.

제56조 중 “영 제84조제5항”을 “영 제84조제6항제1호”로 한다.

제56조의2 중 “영 제84조제5항제2호”를 “영 제84조제6항제2호”로 한다.

제56조의3 중 “영 제84조제5항제3호”를 “영 제84조제6항제3호”로 한다.

제56조의4 중 “영 제84조제5항제4호”를 “영 제84조제6항제4호”로 한다.

제56조의5 중 “영 제84조제5항제5호”를 “영 제84조제6항5호”로 한다.

제56조의6 중 “영 제84조제5항제6호”를 “영 제84조제6항제6호”로 한다.

제57조 중 “영 제84조제6항”을 “영 제84조제7항”으로 한다.

제61조의2 중 “영 제93조제2항 단서”를 “영 제93조제6항”으로 한다.

제61조의4 중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임대 의무기한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를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로 한다.

제66조제1항제1호 중 “제20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을 “이 조례 제20조제1항제2호 전단”으로 한다.

별표 3부터 별표 5까지, 별표 7, 별표 10, 별표 12, 별표 14, 별표15, 별표 17, 별표 18, 별표 20, 별표 2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군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으로서 영 제25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제5호·제7호에 해당하는 변경</u> <u>2. 가구(영 제42조의2제2항4호에 따른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면적의 10퍼센트이내의 변경</u> <u>3.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u> <u>4. 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u> <u>5.<삭제 2014.10.01></u> <u>6.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군계획시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u> <u>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와 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u> <p><u>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①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거창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에 의한다. 다만, 관리에 관하여 따로 조례가 제정되어있는 군계획시설의 경우에는 그 조례에 의한다.</u></p> <p><u>② 군계획시설 중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군계획시설의 관리는 동시설</u></p>	<p><u><삭 제></u></p> <p><u>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①----- 에 따라----- ----- ----- ----- 에 따른다.----- ----- ----- 따른다. ② ----- ----- 그 시설</u></p>

의 설치근거가 되는 법률을 판장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4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2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2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 ②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26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6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②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①-----
에 따라-----

-----각 호의 어느 하나-----

1. -----

2. -----

-----한정한다)
3.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

<삭 제>

제28조(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
영 제59조의2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
원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 운영
규정을 따른다.

제30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
금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6항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하고 총공사비의
20퍼센트로 한다.
② (생략)

제3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3. (생략)

제33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 및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자연경관지
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 15. (생략)

제35조(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 및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수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없다.
1. ~ 15. (생략)

제28조(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6호---

② (현행과 같음)

제3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부칙
(대통령령 제17816호, 2002.12.26.) 제13조
제1항에 따라-----

1. ~ 23. (현행과 같음)

제33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1. ~ 15. (현행과 같음)

제35조(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1. ~ 15. (현행과 같음)

제37조(전통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 및 「경상남도 도시계획
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전통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 15. (생략)

제38조(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 및 「경상남도 도시계획
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조망권경관
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
제한은 법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의한다.

제50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진흥
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다른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
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경상남도나 군이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제37조(전통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

1. ~ 15. (현행과 같음)

제38조(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

제50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9조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
계획 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개발
진흥지구에서 해당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있다.

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경상남도나 군이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정한다)

②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제53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생략)

1. ~ 18. (생략)

19.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20. ~ 21. (생략)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영 제84조제7항

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

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

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제53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현행과 같음)

1. ~ 18. (현행과 같음)

19. -----
<삭 제>

20. ~ 21. (현행과 같음)

② -----영 제84조제8항

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폐율을 60퍼센트 이내로 한다.

- 1. ~ 2. (생략)

<신 설>

③ 제1항에 불구하고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내의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내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내로 한다.

- ④ (생략)

<신 설>

제54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생략)
-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50퍼센트 이하

- 4. ~ 5. (생략)

제55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

- 1. ~ 2. (현행과 같음)
-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③ -----제84조제9항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 ④ (현행과 같음)

⑤ 영 제84조의3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
- 2.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30퍼센트 이하

제54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

- 1. (현행과 같음)
- 2.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 3. -----
60퍼센트--

- 4. ~ 5. (현행과 같음)

제55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

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56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준주거지역, 근린 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6조의2(재해예방시설 설치 건축물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6조의3(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건축물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5항제3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 한다.

제56조의4(계획관리지역내 기존공장 증축 시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5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1월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의 가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제56조의5(녹지지역 등에 있는 한옥 등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5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제56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1호-----

제56조의2(재해예방시설 설치 건축물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2호-----

제56조의3(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건축물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3호-----

제56조의4(계획관리지역내 기존공장 증축 시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4호-----

제56조의5(녹지지역 등에 있는 한옥 등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5호-----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 3. (생략)

제56조6(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 내 공장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5항제6호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영 같은 조 제3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내의 공장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7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2조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61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제61조의4(임대주택, 기숙사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임대 의무기한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

1. ~ 3. (현행과 같음)

제56조6(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 내 공장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6호--

제57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7항-----

제61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6항-----

제61조의4(임대주택, 기숙사 용적률 완화)
 ①-----

 -----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p>건설 시 허용하는 용적률은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로 한다.</p> <p>② (생략)</p> <p>제66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u>제20조 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u>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p> <p>2. ~ 3. (생략)</p> <p>② ~ ⑤ (생략)</p>	<p><u>한정한다</u>)-----</p> <p>-----</p> <p>② (현행과 같음)</p> <p>제66조(분과위원회) ①</p> <p>-----</p> <p>-----</p> <p>1.-----<u>이 조례 제20조 제1항제2호 전단</u>-----</p> <p>-----</p> <p>2. ~ 3. (현행과 같음)</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	--

[별표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3호 관련)

※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와 옥외 철탑을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 및 마목의 시설(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백 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12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6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으로서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의 소매시장·상점에 한정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동호 가목의 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 병원에 한정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동호 다목, 라목, 바목에 해당하는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동호 가목(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 연습장은 제외한다), 나목의 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기록매체 복제업·봉제(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컴퓨터관련 전자제품 조립업·두부제조업·세탁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연면적의 합계가 1천5백 제곱미터 이하의 지식산업센터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 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이에 딸린 과자 제조업을 포함한다.)의 공장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인 경우에는 악취방지사설 등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것
다. 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적다고 인

정하였을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너비 15미터 이상인 도로에 6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설치하는 가목, 사목에 한정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너비 15미터 이상인 도로에 6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설치하는 같은 호 가목에 한정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4호 관련)

※ 15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다만, 7층 구역으로 정한 지역은 7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옥외철타를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백 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너비 8미터 이상의 도로에 6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공연장·집회장·전시장, 동·식물원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상점(너비 15미터이상의 도로에 6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가목 중 정신병원·요양소 및 나목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다목, 마목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의 경우에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철타가 세워진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소 및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다만, 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9. 별표 3 제9호 및 제10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목, 사목에 한정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가목, 나목, 아목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마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한정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5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와 옥외철타를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너비 8미터 이상의 도로에 6미터 이상 접한 대지(동호 다목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나목, 다목(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이거나, 너비 15미터 이상 도로에 8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같은 호 가목에 한정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 하되,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 하는 것에 한정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철타를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및 사격장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다만, 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9. 별표 3 제9호 및 제10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같은 호 가목, 사목에 한정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가목, 나목, 아목 (주기장은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한정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제7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70퍼센트 미만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업·인쇄업·금은세공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4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중 창고는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제10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기계식세차 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판매소, 액화가스취급소·판매소, 도료류판매소는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및 세차장은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2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의 종업원용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소, 격리병원, 장례식장은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직업훈련소, 기술계학원, 연구소에 해당하는 것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도축장, 도계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4호 관련)

※ 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농가 주택과 기존주택의 기능회복을 위한 증·개축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사목·아목·차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다목,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5호 관련)

※ 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다세대주택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용 판매시설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 교육원(농·임·축수산업과 관련된 시설에 한한다), 직업훈련소 및 연구소(농·임·축수산업과 관련된 시설에 한정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제1차 산업생산품 가공공장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2호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 마. 「폐기물 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별표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7호 관련)

※ 2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사목아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가목의 창고(농·임·축수산업용에 한정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및 마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중 라목에 해당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및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8호 관련)

※ 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다세대주택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바목, 사목에 해당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용에 한정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농촌융복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이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교육시설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시설을 포함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중 도정공장·식품공장과 읍·면 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 하는 것
 -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 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액화가스판매소, 액화가스취급소, 도료류 판매소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나목에 해당하는 것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별표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20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바목, 사목에 해당하는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나목에 해당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중 자연권수련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나목에 해당하는 것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22호 관련)

※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 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 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후계농업경영인·후계수산업경영인, 전업농업인·전업수산업인 또는 군이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정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9 제2호자목(1)에서부터 (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나목, 사목에 해당하는 것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